

안양시 규칙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규칙

제정 2019. 9. 18 규칙 제154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안양시 규칙 중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안양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3조(「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있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”를 “있고”로 한다.

제4조(「안양시 주·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주·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